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0월 25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 상 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년 10월 14일 (월)

나. 제 출 자 : 마동환 의원 외 7명

##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2013년 10 월 15일 (화)

## 4. 관련근거

「주차장법」 제14조

## 5. 개정이유

공영주차장내 생활체육관 등을 이용(강습)하는 프로그램 수강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료 면제 시간을 확대하고자 함

## 6. 주요 개정내용

공공시설 이용(강습) 차량의 면제시간을 현행 90분에서 2시간 이내로 조정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 7.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영리생활체육관 등 공영주차장내 부대시설로 설치된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자가 프로그램 수강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있는 주차시간을 현행 90분에서 2시간 이내로 연장하여 주민의 부담 경감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료주차 시간 연장시 주차수요 유발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장 혼잡 우려와 주차료 수입의 감소 등이 예상되나, 현재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무료 주차 시간이 부족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민 불편 해소와 편의를 위해 무료 주차시간 연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무료주차 시간이 확대될 경우 공영 주차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수입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료주차 시간을 시설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2시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예산 관련하여 집행부에 의견 조회 결과, 30분 연장시 최대 약 1억원의 주차수입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감소금액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정확히 산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현재, 4개 시설의 이용 차량 중 무료주차 시간 90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징수하고 있는 요금이 월 평균 321만원, 연간 3,853만원 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30분 연장시 감소되는 수입은 실제 연간 1억원까지 이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특히, 초과분 주차요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창천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3시간을 무료 주차할 수 있으나, 90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스포츠센터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수입은 월 평균 289만원에 연간 3,467만원 가량으로, 요금은 우리구와 협약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어 향후 협약 내용에 따라 수입은 증감될 수 있으며, 기타 조례 개정에 따른 중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현황

### ▣ 공영주차장 현황

| 주차장명            | 급지 | 주차요금<br>(5분당) | 주차면 | 정기권 | 면제시간 | 비고                       |
|-----------------|----|---------------|-----|-----|------|--------------------------|
| 염리<br>(생활체육관)   | 2  | 250           | 135 | 133 | 90분  | 2개 프로그램 이용시<br>90분 2매 지급 |
| 도화<br>(주민센터)    | 2  | 250           | 64  | 24  | 90분  | 방문 민원은 60분 무료            |
| 창천<br>(스포츠센터)   | 4  | 150           | 280 | 200 | 3시간  | 90분 무료, 추가시간은<br>센터에서 부담 |
| 망원1-2<br>(주민센터) | 5  | 100           | 150 | 178 | 60분  | 수강생 및 방문 민원<br>60분 무료    |

※ 마포아트센터는 프로그램 이용자 3시간, 2개 이상 프로그램 이용시 4시간 무료

### ▣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주차장명  | 계  | 50분 | 60분 | 70분 | 90분 | 110분 | 120분 | 180분 |
|-------|----|-----|-----|-----|-----|------|------|------|
| 염리    | 38 | 26  |     | 6   |     | 6    |      |      |
| 도화    | 28 |     | 18  |     | 2   |      | 6    | 2    |
| 창천    | 36 |     | 34  |     |     |      | 2    |      |
| 망원1-2 | 12 |     | 3   | 8   |     |      | 1    |      |

### ▣ 30분 연장시 주차요금 감면 현황

(단위 : 원)

| 주차장명  | 연간이용<br>회원 차량 | 월 수납요금    | 30분 추가시<br>연간 최대 비용 | 비고 |
|-------|---------------|-----------|---------------------|----|
| 합계    | 99,108        | 3,210,985 | 100,125,000         |    |
| 염리    | 6,192         | 125,583   | 9,280,000           |    |
| 도화    | 3,276         | 80,417    | 4,968,000           |    |
| 창천    | 71,964        | 2,889,285 | 64,666,000          |    |
| 망원1-2 | 17,676        | 115,700   | 21,211,000          |    |

※ 30분 추가시 연간 비용 = 이용차량(연간)×30분 주차요금

## 관계 법령

### ■ 주차장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을 당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1.1, 2001.3.26)

② ~③ 생략